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공 원 녹 지 과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미시 도시숲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4조)

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마. 가로수 진단조사, 시민참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바. 관리 위탁,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미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 중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

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고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17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 ①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가로수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여부 검토 시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수목에 대하여 나무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19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피해수목, 고사, 도복 등 위험수목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병충해 확산 우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0주 미만의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이 도시숲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 등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도시숲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부담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에 사고 또는 위해 등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도시숲등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고지일로부터 30일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도시숲등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시숲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원인자부담금 · 훼손자부담금 산정기준(제21조 관련)

<table>
<tr><td>훼손자
부담금
(피해변상금)</td><td>1. 벌채, 수간 절단, 뿌리 뽑힘 등으로 정상 생육이 불가능하거나 생장이 가능할지라도 관상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때
: 도급공사설계비 전액 변상 100% (피해변상금 세외수입)
2. 역지 등 가지가 많이 손상되어 관상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때
: 도급공사설계비의 50% (피해변상금 세외수입)
3. 수간 박피, 가지 손상 등 외형만 손상된 경우, 반도복으로 바로 세우기, 지주설치 등 복구가 가능한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의 20% (피해변상금 세외수입)</td></tr>
<tr><td rowspan="2">원인자
부담금
(수목대체
식재비 등)</td><td>4. 이식의 경우
가. 수목 대체식재비 예치금액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td></tr>
<tr><td>5. 제거의 경우
가. 피해변상금 납부금액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수입</td></tr>
<tr><td colspan="2">· 피해변상금 · 수목대체식재비 징수기준 : 도급공사설계비에 상당한 금액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 수 목 비 : 가격정보지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 적용
· 예치금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금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예치
· 예치금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입조치</td></tr>
</table>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공원녹지과
입 안 자	과 장	정 윤 호
	팀 장	박 현 아
	담 당 자	전 찬 숙 (480-5553)